2020. 7. 29.(수) 15:00
운영위원회 회의실(108호)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

회 의 자 료

충 청 남 도 의 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제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계획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20. 7. 29.(수) 15:00

○ 장　　소 :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108호)

○ 참 석 자 : 의장, 정책위원(20명), 사무처장, 담당관, 상임위 수석 등 30명 내외

○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전체회의

정책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20명(도의원 11명, 외부전문가 9명)
√ 임　　기 : 2020. 7. 29. ~ 2022. 6.30. (제11대 의회 후반기)
√ 기　　능 :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제시 및 정책의 연구

Ⅱ 세부추진 계획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2	○ 개회 및 행사안내	입법정책담당관
15:02 ~ 15:05	○ 국민의례	입법정책담당관
15:05 ~ 15:10	○ 위원 위촉장 수여	의　장
15:10 ~ 15:15	○ 인사말씀	의　장
15:15 ~ 15:20	○ 참석자 기념촬영	
15:20 ~ 16:00	○ 전체회의 -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	
16:00	○ 폐　회	

○ 전체회의 안건

- 위원장(호선) 및 부위원장(위원장 지명) 선출
-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정(위원장 지명)
- 제2기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및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선정 등

순 서

■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

Ⅰ. 운영 개요 ····· 3

1 구성 현황 ····· 3

2 주요 기능 ····· 3

3 회의 운영 ····· 4

Ⅱ. 회의 운영 세부 계획 ····· 4

1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 4

2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 5

■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 제안서

1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 15

2 연구용역 과제 자문 의견서 ····· 21

참고

1.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
2.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추진계획
3.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4.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

◇ 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 및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업무의 심사수행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운영 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1 구성 현황

○ 근　　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인　　원: 총 20명(도의원 11명, 외부전문가 9명)

- 의장, 부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에서 추천 → 의장 위촉

※ 붙임 : 제2기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임기: 2020. 7. 29.~2022. 6. 30.(제11대 의회 후반기)

제1기 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 구　　성 : 20명(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10명)
√ 임　　기 : 2019. 1. 10.~2020. 6. 30.(제11대 의회 전반기)
√ 운영실적 : 회의 25회(전체 8, 소위 17), 워크숍 1회, 정책자문 3건, 정책토론 2건

2 주요 기능

○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심의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심의

○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결과물 평가·활용관리 심의

⇨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3개 분야) 구성·운영**

소위원회	·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3 회의 운영

○ 정기회 연 1회, 임시회(수시) 개최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Ⅱ 회의 운영 세부 계획

1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회의 일정

① 정기회의 : 연1회(1~2월)

○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및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보고

○ 연구용역(입법정책, 의원정책개발비) 과제 심사·선정 등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② 임시회의: 사안 발생시(수시)

○ 기타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결정 사안 발생시

- 연구용역(입법정책, 의원정책개발비) 과제 결과물 심사 등

○ 정책위원회 워크숍 개최

심의 내용

①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련 심의

과제선정 심 의	▸ (시 기) 1월~2월 ▸ (심의대상)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제안과제(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심의, 예산액 범위에서 용역과제 선정 **※ 2020년 예산액 : 90,000천원(4건 68,800천원 진행중)**
결과물 심 의	▸ (시 기) 10월~12월 ▸ (심의내용) 입법정책 용역 최종보고회 또는 완성검사 전 성과품의 적정성·타당성·충실성 등 심의

② 의원 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관련 심의

과제선정 심 의	▸ (시 기) 1월~2월 ▸ (심의대상) 의회 연구모임 제안과제에 대하여 심의·선정 ※ 2020년 예산액 : 210,000천원(15건 204,998천원 진행중)
결과물 심 의	▸ (시 기) 10월~12월 ▸ (심의내용) 입법정책 용역 최종보고회 또는 완성검사 전 성과품의 적정성·타당성·충실성 등 심의

과제 선정 심의 기준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2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 안)

· 제1 소위원회 : 기획경제·교육 소관 소위원회(의원3, 전문가3)
· 제2 소위원회 : 행정문화·복지환경 소관 소위원회(의원4, 전문가3)
· 제3 소위원회 : 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 소관 소위원회(의원4, 전문가3)

○ (회의 운영) 소위원회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간사로 선정된 상임위)

- 회의방식(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일시, 장소, 회의자료 작성 등

※ 소위원회 간사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소위 위원장이 지명

○ (소위원회 기능)

- 소위원회 회의 수시 개최 :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토론회·세미나 등 운영, 입법정책 연구용역 자문 등
- 소위원회 개최 시 과반 수 이상 참여 원칙

○ **(정책자문)** 소위원회별 연구과제 선정 후 전문가 자문 의뢰

소위원회 정책 연구·자문

√ 건　　수 : 소위원회별 2~3건
√ 자 문 료 : 1건당 3,000천원 이내　※ 정책위원회 운영비 40,000천원 중 일부 활용
√ 기　　간 : 2020. 8월~11월
√ 과　　제 : 소위원회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연구·자문 과제로 선정
√ 추진절차

자문·연구 과제 선정	➡	자 문 · 연 구　추 진	➡	결　과　공　유	➡	사　후　관　리
소　위　원　회		소　위　원　회		정 책 위 원 회		소　위　원　회

○ **(예산 지원)** 회의 참석수당, 정책연구·자문, 토론회·세미나 등

- 소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기본료 100천원, 2시간초과 50천원)
- 소위원회별 연구과제 자문료 : 1건당 3,000천원 이내
- 기타 비용 : 사무용품비, 현수막, 회의자료 인쇄비 등
- 토론회·세미나 등은 '2020년 의정토론회 운영수당 지급기준' 적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준용 및「청탁금지법 및 동법시행령」준용

붙임1 **제2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명단**

소속 상임위 및 현직	성 명	비 고 (전공분야)
기획경제위원회	방한일	도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도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도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도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한태	도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도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도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윤철상	도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도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 훈	도의원
교육위원회	김영수	도의원
한서대학교 교수	김제철	경제학, 공항행정학
공주대 겸임교수	김창환	행정학 (지역사회개발학)
공주대학교 교수	서정호	문화재보존과학, 전통건축보존
선문대학교 교수	이성수	산업심리학
공주대학교 교수	이진헌	환경보건
前)중부대학교 교수	장준근	문화예술
순천향대학교 교수	정병웅	관광경영
(주)경일종합기술공사 사장	최재왕	도시계획, 행정학
상록수공동법률사무소	최종석	법학

붙임2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소관 상임위	용 역 명	용역기관	예산액 (계약금액)	용역기간
합 계	4건		75,000 (68,800)	
기획경제위원회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 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연구	(사)한국지방자치학회	18,000 (17,500)	'20.6.18.~10.15.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 노인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재)충남복지재단	19,000 (17,100)	'20.6.15.~10.12.
농수산해양위원회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서식지 보호방안 타당성 연구	사단법인 생태지평	19,000 (17,100)	'20.6.15.~12.11.
교육위원회	충남형 방과 후 초등 돌봄 통합 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구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19,000 (17,100)	'20.6.12.~11.30.

※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과제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제출(7.17)

붙임3 #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상임위	연구모임		용 역 명	소요액	용역 기간
합 계		13개 연구모임		15건 선정	204,998	
1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의 재정투자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공휘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 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20,000	6개월
2	기획경제위원회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방한일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	10,000	4개월
3	기획경제위원회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조승만	축산 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관리·개선 방안 연구	20,000	5개월
4	행정문화위원회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김 연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계획 수립	20,000	4개월
5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김옥수	충남형 영유아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10,000	6개월
6	복지환경위원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오인환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20,000	6개월
7	복지환경위원회	문화를 통한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여운영	충남형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	10,000	6개월
8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김득응	유아 메이커교육 활성화 적용방안 연구	10,000	5개월
9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 농촌형 주민 자치회와 정책 융복합 연구모임	김명선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10,000	3개월
10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 농촌형 주민 자치회와 정책 융복합 연구모임	김명숙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 추진방안 연구	5,000	3개월
11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김영권	충청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	5,000	3개월
12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 방안 연구모임	이계양	소하천 유입수 수질개선을 통한 선제적 녹조예방 사업의 연구	20,000	5개월
13	교육위원회	청년농업인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양금봉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운영 연구	4,998	3개월
14	교육위원회	충청남도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김석곤	충남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학교 생활 적응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방안 연구	20,000	6개월
15	교육위원회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김은나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조사	20,000	6개월

붙임4 # 제1기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 전체회의 개최 : 8회('19년 5회, '20년 3회)

연번	일 자	주 요 내 용
1	'19.1.10.(목)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전체회의
2	'19.3.12.(화)	· 정책위원회(소위원회) 운영방향 보고·토의 · 2019 입법정책 연구용역 변경계획 심의
3	'19.4.8.(월)	·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관련 심의
4	'19.7.31.(수)	·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상황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 상황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 운영방향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
5	'19.11.26.(화)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 보고
6	2020.2.21.(금)	· 2020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 · 2019년 소위원회 정책 연구결과 공유
7	2020.4.29.(수)	·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8	2020.6.15.(월)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워크숍 개최 : 1회

연번	일 자	주 요 내 용
1	2020.6.2.(수) ~6.3.(목) (1박2일)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검토 및 정책위 활성화 방안 토론 등

□ 소위원회의 개최 : 17회

합 계	1분과 (행정자치경제농어업)	2분과 (문화환경건설소방)	3분과 (교육보건복지)
17	5	4	8 (토론회 2회 포함)

□ 소위원회 정책자문 : 3건

연번	연 구 주 제	사업비 (천원)	자문기간	자문위원
계	3개 과제	9,000		
1	드론 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3,000	7월~9월	강 욱 (경찰대 교수)
2	블록체인을 통한 지역투표 활성화에 관한 연구	3,000	7월~9월	박창원 (충남도립대 교수)
3	충남 지역 문화축제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3,000	8월~10월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 소위원회 정책토론 : 2건

연 번	정 책 토 론 과 제	발 제 자
1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기초교육 육성 사업	이노신 (호서대 교수)
2	노인요양시설 돌봄인력 직종별 보수교육실태 분석을 통한 보수교육의 커리큘럼 연구	김원천 (호서노인전문 요양원 원장)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 제안서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 제안서

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소 요 예 산	금 21,200,000원
소 요 기 간	○ 4개월(7월～11월)
연구 필요성	〈외부요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둘러싼 대내외 급속한 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 시도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지방농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2019년 1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2020년 2단계 재정분권이 예정된 가운데, 재정분권화 과정에서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자율성에 따른 농정 예산의 재정 투입 감소 문제 등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필요 ○중앙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과 주민 중심 정책들의 연계·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부에서도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산업으로서 농업과 교육, 복지,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 간 융복합 필요성 제기 〈내부요인〉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도(農道)로서 위상 재정립 시급 ○국정 방향과 도정 우선순위 반영을 위한 농정조직 간 탄력적 조직운영 방안 검토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유사·중복업무 폐지 또는 축소가능 사무의 과감한 조정 등 두 기관 간 합리적 업무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농정수요에 적극 대응 - 농촌, 환경, 식품, 기본소득, 민관협치, 자치농정 등 농정을 둘러싼 정책수요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 ○농업(산업)에서 농촌(공간) 중심으로 정책기조 전환에 부합한 충남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향 마련

	○기존 농업·농촌 관련 조직이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인지 전반적인 점검 및 전략 마련 시급
주 요 연구내용	○지방농정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와 시사점 도출 - 자치분권 동향과 재정분권에 따른 농업·농촌정책사업 지방이양과 충남도의 대응 방향 등 시사점 정리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관계 조성 등 정책 추진체계에 대응한 충남 농정추진체계의 전환 방향 설정 ○ 농업·농촌 정책수요 다변화 분석 - 농산물시장 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 식품수요 변화, 농촌정책 변화, 기본소득 등 농업인 소득안정대책 확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법제화 등 환경과 생태에 대한 국가적 의제화 등 정책수요 분석 -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까지 전과정에서 민과 관의 공동생산·공동실행 등 민관협치의 필요성 대두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역할 재정립 및 재편 방향 제안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기능 및 역할, 인력을 진단하여, 향후 보강·축소해야 될 분야에 대한 논리적 정리 -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발굴,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 농정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능 및 적정인력 진단,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 농정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농정조직 재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일본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정조직 재편사례 분석
활용계획	○충남 농정조직 재설계 시 참고자료 - 충남 3농정책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정조직 재편에 활용 ○국·도정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한 농정조직 개편으로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자치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광역단위 농정조직 모델 제시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
제 안 자	소속 : 농수산해양위원회 성명 : 김 영 권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21,20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정부의 자치분권을 둘러싼 대내외 급속한 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 시도

○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지방농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 2019년 1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2020년 2단계 재정분권이 예정된 가운데, 재정분권화 과정에서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자율성에 따른 농정 예산의 재정 투입 감소 문제 등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중앙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현장과 주민 중심 정책 간 연계·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부에서도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산업으로서 농업과 교육, 복지,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 간 융복합 필요성 제기

나. 과업의 목적

○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도(農道)로서 위상 재정립

○ 국정 방향과 도정 우선순위 반영을 위한 농정조직 간 탄력적 조직운영 방안 검토

- 코로나 19를 계기로 농업·농촌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그린뉴딜과 뉴노멀에 대한 사회적 이슈 대두
- 농업·농촌의 미래수요전망 속에서 충남 농정조직의 재편방향 검토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유사·중복업무 폐지 또는 축소가능 사무의 과감한 조정 등 두 기관 간 합리적 업무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농정수요에 적극 대응

- 농촌, 환경, 식품, 기본소득, 농업안전, 민관협치, 자치농정 등 농정을 둘러싼 정책수요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

○ 농업(산업)에서 농촌(공간) 중심으로 정책기조 전환에 부합한 충남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향 마련

○ 기존 농업·농촌 관련 조직이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인지 전반적인 점검 및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전략 수립

3. 과업의 내용

가. 지방농정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와 시사점 도출

○ 자치분권 동향과 재정분권에 따른 농업·농촌정책사업 지방이양과 충남도의 대응 방향 등 시사점 정리

- 자치분권에 따라 농림사업 지방이양 동향 정리
- 재정분권에 따른 농업·농업 예산구조의 변화 정리

○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관계 조성 등 정책 추진체계에 대응한 충남 농정 추진체계의 전환 방향 설정

나. 농업·농촌 정책수요 다변화 분석

○ 농산물시장 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 식품수요 변화, 농촌정책 변화, 기본소득 등 농업인 소득안정대책 확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법제화 등 환경과 생태에 대한 국가적 의제화 등 정책수요 분석

○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민과 관의 공동생산·공동실행 등 민관협치의 필요성 대두

- 농업회의소의 법제화 등 농업·농촌의제 결정 및 공론장의로서 거버넌스의 필요성 확대
- 농업·농촌분야 민관협치 확대에 대응한 유연한 행정조직 재편 방향 검토

다.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역할 재정립 및 재편 방향 제안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기능 및 역할, 인력을 진단하여, 향후 보강·축소해야 될 분야에 대한 논리적 정리

- 중앙정부의 농정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정 업무 재조정 검토 필요
-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강화와 이에 대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지자체별 농어민수당 또는 기본소득 도입, 농업환경프로그램 확대, 푸드플랜 등 식품분야 정책 수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 및 지방이양에 따른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농정 조직 및 인력재편 방향 정립

○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발굴,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현 업무 분석 및 사업 간 유사·중복성 평가
-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 이원화에 따른 현장 애로와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이 어려운 분야 등 정리

○ 농정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능 및 적정인력 진단,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라. 농정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농정조직 재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일본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정조직 재편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정리

산 출 내 역 서

ㅇ 용 역 명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용역기간 : 2020. 7 . . ~ 2020. 11. 30.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역원가	① 인건비	책임연구원	인	1	3,875,670		*3,229,730×2×20%×1×4달* *2,476,514×2×20%×2×4달* *1,655,466×2×20%×2×4달*
		연구원	인	2	7,924,840		
		연구보조원	인	1	2,648,740		
		인건비계			**14,449,250**	**68%**	
	② 경비	여비	인	4	825,000		*책임연구원 45,000*1명*5회* *연구원 40,000*2명*5회* *연구보조원 40,000*1명*5회*
		유인물비	종	110	2,220,000		*최종보고서 20,000*30부* *결과보고서 20,000*80부*
		전산처리비	월	4	400,000		*100,000*4월(토너, A4 등)*
		회의비	회	3	300,000		*100,000원×3회*
		경비계			**3,745,000**	**18%**	
③ 순 용역원가(①+②)					**18,194,250**	**86%**	
④ 일 반 관 리 비 (③의 6 % 이 내)			2%		363,880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4%		742,320		
⑥ 총 용 역 원 가 (③ + ④ + ⑤)					19,300,450		
⑦ 부 가 가 치 세 (⑥ 의 1 0 %)			10%		1,930,040		
총 용 역 비					**21,200,000**	**100%**	**만단위 절사**

Ⅱ 연구용역 과제 자문 의견서

<과제명>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검 토 자 : 충남연구원 김진영)

□ 검토의견

연번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❶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응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높음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기능의 통폐합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도의 조직개편과 연계가 되는 문제이므로 연구의 범위설정에 주의 필요 -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이전에, 연구용역의 필요성 인지 및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 있음
❷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입찰 등 가능
❸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충남 농정조직 재설계시(중복업무 재편) 참고자료 활용가능 -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의 조직 통폐합과 관련 하여는 도(집행부)와의 사전 협의 필요
❹	용역비의 적정성	○ 용역비에 비하여 예상되는 과업의 양이 다소 많음
❺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사항 (최근 5년)	
❻	산출내역의 적정성	○ 회의비의 비율이 너무 낮음 ○ 전문가의 의견수렴 위한 자문수당에 대한 고려 없음
❼	실무차원의 시행 가능한 용역과제 여부	
❽	장기용역사업(1년이상)으로 사업시기 적성합이 낮은 용역 여부	○ 해당없음. 용역기간 및 시기 적합함
❾	기타 연구실익 여부	○ 시군단위에서도 농정조직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례가 다수 있음. 시군단위의 경우, 분리 운영, 통합, 통합 후 다시 분리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그 외 동 과제 추진을 위한 제반의견

○ 본 연구의 수행 이전에 도(집행부)와 본 과제에 관한 의견 소통 필요

- 본 과제의 핵심 연구내용이 조직의 통폐합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를 의미함
- 도(집행부)와의 의견 소통 이후에 농림축산국 공무원, 농업기술원 공무원, 농업인 대표 등을 포함하는 토론회 사전개최 필요

○ 연구내용의 조정 필요

-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주요선진국의 농정조직 재편에 대한 사례연구보다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예산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본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농정조직 재편 사례가 충남도의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시군단위에서도 농정조직과 농업기술센터간의 업무에 관한 조정 사례가 다수 있음. 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단위의 업무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참 고

1.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계획

❖ 2020년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지원,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계획임.

1 추진방향

❍ 도의회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 극대화

❍ 지방의회 발전 등 도의회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

2 추진개요

❍ 예 산 액 : 90백만원(연구용역비)

❍ 용역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연구용역 과제 제안

- 도의원 제안 :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과제 제안
- 사무처 제안 : 상임위 소관 외 의회현안 등은 사무처장이 제안서 제출

※ 정책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전문가)은 소속 소위원회의 위원이나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통하여 제안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제5조

❍ 선정건수 : 5건 이내(※ 1건당 10 ~ 20백만원 범위) ※ 정책위원회 심의 시 변경 가능

-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우선순위 과제를 예산액 범위(90백만원)에서 선정

❍ 용역관리 : 입법정책담당관 총괄

- 수행관리 : 소관 상임위원회 / 의회사무처(소관 담당관)
- 평 가 : 정책위원회 심의 ※ 동 조례 제10조

❍ 계약방법 : 입찰 및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책위원회 외부 위원은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 불가(배제)

〈 2019 입법정책 연구용역 실적 〉

√ 실 적 : 6건(상임위 5,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 계약금액 : 91,300천원(예산액 100,000천원)
√ 용역과제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등

3 세부 추진계획

【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절차 】

1 계획수립 (1월) ➡	【입법정책담당관】 ①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연구과제 및 계약업체 선정방법, 용역수행 등 - 연구용역 수행관리 및 평가 등
2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1~3월) ➡	【상임위원회위원장 / 정책위원회위원장】 ① 연구용역 과제 접수(입법정책담당관 ⇄ 각 상임위·의회사무처 / 정책위원회 외부정책위원은 소속 소위원회 위원이나 업무소관 상임위 의원을 통해 제안) - 연구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접수 ② 과제제안(우선순위) : 상임위 위원장, 사무처장 → 의장 - 제안과제 유사·중복여부, 당면현안, 용역 적정성 검토 등 ③ 전문기관(충남연구원 등) 용역과제 사전검토 의뢰 ④ 연구용역 과제 심의(정책위원회) → 심의결과 반영 의장이 선정
3 계약업체 선정 (3월) ➡	【총무담당관】 ① 입찰 또는 수의계약 의뢰(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과업내용 확정 ② 계약 체결(총무담당관)
4 연구용역 수행 (4~9월) ➡	【소관 상임위원회 /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 ① 용역 수행 관리 ※ 정책위원회 외부 위원은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 불가(배제) ②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도의원, 소관 소위 정책위원, 과제관련 전문가, 집행부 등 참여 ※ 계약기간 만료 14일 전 최종보고회 개최
5 정책위원회 심의 및 검수(완료) (10월) ➡	【입법정책담당관 / 소관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① 정책위원회 심의(입법정책담당관) - 용역 보고서의 적정성·타당성·충실성 등 - 계약기간 만료 14일전 심의(최종보고회와 병행실시) ② 연구용역 검수(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용역 완성 검사 등
6 사후관리 (11월~) ➡	【소관 상임위·의회사무처 소관 부서 / 입법정책담당관】 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입법정책연구용역) ② 간행물 등록(입법정책담당관) ③ 용역결과 사후 관리(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 -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④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충실성·우수성 평가

■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입법정책담당관) : 의장 방침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4조

- 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방법
- 계약업체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관리
- 연구용역 평가 등

※ 계획 도의회 정책위원회 심의

■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 연 구 대 상 >

▸ 연구범위

- 지방의회 현안, 지방의회 발전 등 의회 관련 과제
- 조례 제·개정으로 도민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
- 학술적 연구를 통해 충남도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과제

▸ 연구건수 : 5건 이내, 건당 10~20백만원 범위(상임위 및 사무처 제안)

▸ 과제선정 기준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과제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① 제안과제 모집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5조

❍ 모집안내

- 총괄부서(입법정책담당관)가 각 상임위원회 및 각 담당관, 정책위원회에 공문발송(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에게 연구과제 제안 안내)

  → 의원 제안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3담당관 소관 담당관 제안 과제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제출

※ 정책위원회 외부위원은 소속 소위원회의 위원이나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의회사무처를 통하여 제안·제출 가능

❍ 제안과제 접수 및 검토

- 의원이 제안한 과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임위원장이 의장에 제출

※ 연구의 전문성, 활용도 강화를 위해 제안 의원은 소속 상임위 관련 과제 제출 권장

- 사무처장은 각 담당관 등이 제안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 제출

❍ 제출기간 : 2020년 2월 29일까지(원칙 매년 1 ~ 2월)

- 제출서류 :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붙임)

※ 연구용역 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충남연구원 등) 또는 단체에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음

② 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연구용역 과제 심의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기능) 및 제3조(구성)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및 사무처장이 제출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

⇒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용역 과제 최종선정(의장)

<과제 선정 심의기준>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제안 현황 (서식 예시)

제안 부서		우선순위	연 구 과 제	소요예산(천원)	선정여부	비고
계						
상임위	○○○위원회	1	○○○	10,000	○	
		2	○○○	8,000	×	
사무처	○○담당관	1	○○○	10,000	○	
		2	○○○	9,000	×	

※ 연구용역 선정기준(중복여부, 타당성, 용역비 적정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의로 연구용역 과제 최종 결정

■ 계약업체 선정

❍ 연구기관의 선정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선정

❍ 계약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20,000천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등 계약절차 이행 추진

※ 다만, 동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계약부서 : 총무담당관에 의뢰 계약체결(각 상임위·담당관→총무담당관)

■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수행 관리 : 각 상임위원회 /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

<관리 원칙>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10조제1항

-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행 상황 점검·관리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10조제2항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 보고회 참석대상 : 제안의원, 해당 상임위 의원, 정책위원회 위원, 과제관련 전문가, 집행부 관계자 등

※ 보고회 준비 부서에서는 과제관련 전문가 필히 참석

- 보고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의견 수렴

■ 정책위원회 심의 및 검수(완료)

❍ 정책위원회 심의(입법정책담당관) ※ 최종보고회와 병행 실시

- 계약기간 만료 14일전 심의(최종보고회와 병행 실시)
- 용역 보고서의 적정성·타당성·충실성 등 정책위원회 심의
-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최종보고서 검수 처리

❍ 연구용역 완수 등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최종검토 한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을 확인한 후, 완성검사(검수) 처리
- 연구보고서 결과물 발간 · 등록 및 배포

· 배부대상 : 전체 의원(42명), 상임위, 정책위원회(30부), 집행부 해당 실과 등

■ 사후관리

❍ 연구결과 공개 : 소관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12조

- 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 → 입법정책 연구용역)

❍ 간행물 등록(입법정책담당관)

❍ 용역결과 사후 관리 : 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

-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 연구용역 평가 심의 : 정책위원회

- 평가시기 : 2022년 1월
- 평가대상 : 2020년도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평가내용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 도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공개

평가분야(100점)	평 가 항 목	비 고
충실성(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입법정책담당관이 정량평가한 점수
	· 용역기한 준수(10)	
우수성(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평가위원 별도 구성 (제안의원, 집행부서의 장, 정책위 소위원회 위원 등)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2조제3호 및「충청남도의회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12조

4 소요예산

❍ 예 산 액 : 90백만원(연구용역비)

· 건당 10~20백만원 범위내
· 사업비 범위내 연구용역사업 선정 심의(상임위 등 제안부서 안배 등 고려)
· 연구용역 과제안(상임위, 사무처) 심의 · 선정과정에서 금액 및 과제 건수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일정

❍ 2020년도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 2020년 1월

❍ 2020년도 연구용역 추진계획 안내 : 2020년 1월

-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모집 안내 및 접수

· 상임위원회 과제(각 상임위원회위원장) : 2020년 1월~2월

❍ 2020년도 연구용역 추진

-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2020년 3월(정책위원회)
- 계약체결 : 2020년 3월
- 연구용역 과제수행 : 2020년 4월 ~ 9월

❍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정책위원회 심의 : 2020년 10월

❍ 2020년도 수행 연구용역 평가 : 2022년 1월

2.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추진 계획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추진 계획임

※ 2020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Ⅰ 추진방향

○ 도의회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 극대화

○ 지방의회 발전 등 도의회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연구

○ 정책개발비 지원으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의회상 정립

Ⅱ 추진개요

○ 예 산 액 : 210백만원

- 예산과목 : 입법정책담당관-자치입법활동지원-정책활동지원-정책활동지원-의회비-의원정책개발비(205-05)

○ 경비성격 :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사용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불가)

○ 지원대상 : 연구모임

- 지원방법 : 5개 상임위원회 배분 ※ 의회운영위 간담회 결정(2020. 3. 5.)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타(의장)
의원수	42	8	8	8	8	9	1
배분액	210	40	40	40	40	45	5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모임에서 용역 발주

○ 계약방법 : 입찰 및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용역관리 ※ 세부추진 계획 참고

입법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총무담당관	운영위원회
용역총괄 및 심의·평가	용역 수행관리 및 사후관리	용역 계약	연구모임 등록

Ⅲ 세부 추진계획

1 연구모임 등록 ➡	【의회운영위원회(연구모임 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 등록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 등록된 연구모임을 통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추진 가능
2 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심의 (3월~6월)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정책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 ① 연구용역 과제 제안(연구모임) - 기 등록된 연구모임 또는 신규 연구모임 등록 후 과제 제안 - 연구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 - 연구용역 과제 접수 : 4. 30.까지(신규 연구모임 5. 30.까지) ② 연구용역 과제 심의(정책위원회) : 6월초 - 제안과제 유사·중복여부, 당면현안, 용역 적정성 등 ※ 심의 전 전문기관(충남연구원 등) 사전 검토
3 연구용역 계약 (6월) ➡	【총무담당관】 ① 입찰 또는 수의계약 의뢰(상임위원회)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② 계약 체결(총무담당관)
4 연구용역 수행 (6월~11월)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① 용역 수행 관리(연구모임) - 착수, 완성검사 등 ②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연구모임) - 연구모임 회원, 상임위 의원, 과제관련 전문가, 집행부 등 참여
5 연구용역 결과 심의 및 검수 (11월~12월) ➡	【정책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심의(정책위원회) - 용역 보고서의 적정성·타당성·충실성 등 - 계약기간 만료 14일전 심의(최종보고회와 병행 실시) ② 연구용역 검수(연구모임) - 용역 완성 검사 등
6 사후관리 (12월~) ➡	【상임위원회/정책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 ① 연구용역 결과 공개(상임위원회) ② 용역결과 사후 관리(상임위원회) -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③ 연구용역 평가 및 결과 공개(정책위원회) - 충실성, 우수성 등(2022. 1월)

■ 연구모임 등록

❍ 연구모임 등록 : 상임위원회 등록신청→ 의회운영위원회(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심의

- 기 등록된 연구모임을 통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추진 가능
- 신규 연구모임은 제319회 임시회(5. 11.~5. 25.) 회기 중 등록 심의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다만, 정책개발비 활용을 위한 연구모임에는 운영비 미지급

■ 연구과제 제안 및 심의

< 연 구 대 상 >

► 연구범위

- 지방의회 현안, 지방의회 발전 등 의회 관련 과제
- 조례 제·개정으로 도민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
- 학술적 연구를 통해 충남도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과제

► 과제선정 기준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과제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 (의원 개인의 이미지 전략에 대한 용역,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

① 연구과제 제안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모집안내

- 상임위원회 → 연구모임(기 등록 연구모임 또는 신규 연구모임 등록 후 과제 제안)

❍ 제안과제 제안 및 검토

- 기 등록된 연모임 또는 신규 연구모임 등록 후 과제 제안
- 의원정책개발비 상임위원회별 배분액 범위에서 추진
-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과제는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

❍ 제안과제 접수 : 2020년 4월 30일까지(신규 연구모임 : 5월 30일까지)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입법정책담당관
- 제출서류 :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붙임)

② 연구과제 심의 : 정책위원회(입법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과제 심의 : 「충청남도의회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과제 선정 심의기준>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연구용역 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충남연구원 등) 또는 단체에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음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의장)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

■ 계약업체 선정

❍ 연구기관의 선정 : 「지방계약법」 의거 선정

<집행 불가 사례(예시)**>**

- 의원 연구모임의 회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연구 용역을 수행하려는 경우
- 의원 연구모임에 속한 구성원(전문가, 시민단체 등)에게 연구용역 수행하려는 경우
- 연구 용역 수탁 대상이 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되는 경우

❍ 계약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20,000천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등 계약절차 이행 추진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계약부서 : 총무담당관(상임위원회→총무담당관)

■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수행 관리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관리 원칙>
-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행 상황 점검·관리 : 연구모임(상임위원회)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 보고회 참석대상 : 연구모임 회원, 상임위원회 의원, 과제관련 전문가, 집행부 관계자 등

※ 보고회 준비 부서에서는 과제관련 전문가 필히 참석

- 보고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의견 수렴

■ 정책위원회 심의 및 검수(완료)

❍ 정책위원회 심의(입법정책담당관) ※ 최종보고회와 병행 실시

- 계약기간 만료 14일전 심의(최종보고회와 병행 실시)
- 용역 보고서의 적정성·타당성·충실성 등 정책위원회 심의
-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최종보고서 검수 처리

❍ 연구용역 완수 등 : 상임위원회

- 연구모임(상임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한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을 확인한 후, 완성검사(검수) 처리
- 연구보고서 결과물 발간·등록 및 배포
  · 배부대상 : 전체 의원(42명), 상임위, 정책위원회(30부), 집행부 해당 실과 등

■ 사후관리

❍ 연구결과 공개 :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12조

- 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 → 입법정책 연구용역)

❍ 용역결과 사후 관리 : 상임위원회

-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 연구용역 평가 심의 : 정책위원회

- 평가시기 : 2022년 1월
- 평가대상 :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평가내용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 도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공개

평가분야(100점)	평 가 항 목	비 고
충실성(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입법정책담당관이 정량평가한 점수
	· 용역기한 준수(10)	
우수성(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평가위원 별도 구성 (제안의원, 집행부서의 장, 정책위 소위원회 위원 등)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2조제3호 및「충청남도의회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12조

Ⅳ 추진일정

❍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추진계획 통보 : 2020. 3월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과제 모집 안내(상임위) : 2020. 3월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제안과제 제출 : 2020. 4. 30.까지

- 신규 연구모임 용역과제 : 5. 30.까지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정책위원회) : 6월초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 30부(용역 완료 후)

3.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일 : 2018-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3.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3.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4.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전반기 위원은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 전까지로 하고 후반기 위원은 도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 · 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제16조제1항 중 “자문과 정책과제 연구를”을 “정책연구 등을”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자문”을 “정책연구 등”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를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4.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시행일 :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16조에 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를 정책위원회에 회부 심의 토록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제7(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정책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의 선정)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연구용역 평가)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의장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연구 활동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하여 「충청남도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MEMO

충청남도의회

MEMO

충청남도의회

MEMO

충청남도의회